

# 자격인증기관 인정기준

2009. 03. 24



**한국인정원**  
Korea Accreditation Board

---

---

## 자격인증기관 인정기준

---

---

**KAB-R-31**

### 서 문

1. 이 기준은 한국인정원(Korea Accreditation Board, 이하 “KAB”라 한다.)에서 자격인증기관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KAB로부터 자격인증기관으로 인정을 획득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과 KAB에서 정한 인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은 국제표준인 ISO/IEC 17024(적합성 평가-자격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와 이에 대한 IAF 지침, KAB의 인정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지침 등을 KAB의 인정업무 수행에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기술하였다.
3. 이 기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조항들이 의무사항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 기준에 “~하여야 한다[Shall]”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기준에 사용된 “~하여야 할 것이다[Should]”라는 용어는, 요구사항의 적용을 위한 지침에 불과하나, 인증기관이 채택하도록 하는 규정임을 말한다. 인증기관이 KAB의 해석지침과 달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그러한 예외적인 행위는, 이 기준의 요구사항 및 KAB 해석지침의 취지가 동등하게 충족됨을 인증기관이 KAB에 입증한 이후에 한하여 행위의 건별로 허용된다.
4. 이 기준에서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요구사항(ISO/IEC Guide 17024)에 해당하는 부분은 각 조항별로 기술하였으며, 조항별로 IAF 지침 또는 KAB 지침이 필요한 경우에는 ‘KAB 해석지침’이란 제목 하에 기술하였다. 이 기준은 ISO 및 IAF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그에 따라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

---

# 자격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31

---

---

## 목 차

1. 적용범위
2. 인용표준
3. 용어정의
4.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5. 고용 또는 계약된 인증기관 인원에 대한 요구사항
6. 인증프로세스

[부속서 1] : 인증스킴의 개발 및 유지

[부속서 2] : 품질경영체제 내부심사원의 자격기준

[부속서 3] : 품질경영체제 컨설턴트의 자격기준

[부속서 4] : 환경경영체제 내부심사원의 자격기준

[부속서 5] : 환경경영체제 컨설턴트의 자격기준

부 칙

# 자격인증기관 인정기준

# KAB-R-31

##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자격인증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를 포함하여 특정 요구사항에 따라 인원의 자격을 인증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 <1조에 대한 KAB 해석지침 (G.1.1)>

G.1.1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범위에는 인증의 유형(예. 용접공, 심사원, 안전전문가 등), 해당되는 자격대상자의 범주 및 인증스킴내에서의 등급, 그리고 적용되는 적격성 표준 또는 규범문서가 기술된다. 인증기관의 인정범위는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증기관의 특정 소재지 또는 특정 서비스가 제공되는 분야로 한정될 수 있다.

## 2. 참고 표준 및 적용 문서

### 2.1 참고 표준

다음의 표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ISO/IEC 17000:2004 적합성 평가 - 용어 및 일반 원칙

ISO 9000 : 2005, 품질경영시스템 - 기본사항 및 용어

### 2.2 적용 문서

이 기준과 함께 다음의 KAB 규정 및 규칙이 함께 적용된다.

KAB 인정등록가이드 II(KAB-G-02)

KAB 불만 및 이의처리규칙(KAB-P-20)

KAB 인정기준 적용지침(KAB-A-01~08)중 자격인증기관 해당 지침

## 3. 용어 정의

이 표준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ISO/IEC 17000 및 ISO 9000과 다음에 따른다.

**3.1 이의제기(appeal) :** 신청자, 평가대상자 또는 인증 받은 자가 자신이 희망하는 인증상태와 관련하여 인증기관이 내린 불리한 결정에 대하여 재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

## 자격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31

- 3.2 **평가대상자(candidate)** : 규정된 요구조건을 충족하여 인증프로세스의 적용대상이 되는 신청자
- 3.3 **인증프로세스(certification process)** : 신청, 평가, 인증 결정, 사후관리 및 갱신, 인증서 및 로고/마크의 사용을 포함하여 규정된 적격성 요구사항에 대한 인원의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인증기관의 모든 활동
- 3.4 **인증스킴(certification scheme)** : 동일한 특수 표준 및 규칙과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는 규정된 범주의 인원에 관련된 특정 인증 요구사항
- 3.5 **인증시스템(certification system)** : 유지를 포함하는 적격성 인증서의 발행으로 귀결되는 것으로서, 인증스킴에 따라 인증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자원의 집합
- 3.6 **적격성(competence)** : 인증스킴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식 및/또는 숙련도/기량(skill)을 적용할 수 있는 실증된 능력과 해당되는 경우 실증된 개인적 특질
- 3.7 **불평/불만(complaint)** : 인증기관의 활동 또는 인증기관 고객의 활동과 관련된 시정조치를 위하여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 해당 인증기관에 대하여 요구하는, 이의제기와는 다른 적합성평가 요청
- 3.8 **평가(evaluation)** : 인증 결정에 귀결되는 것으로서, 평가대상자가 인증스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프로세스
- 3.9 **시험(examination)** : 필기, 구두, 실습 또는 관찰과 같은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평가대상자의 적격성을 측정하는 평가 활동의 일부
- 3.10 **시험위원(examiner)** : 관련 기술 및 개인적 자격을 갖추고 시험의 실시 및/또는 채점 수행에 적격한 자
- 3.11 **자격(qualification)** : 개인적 특질, 학력, 교육훈련 및/또는 업무경험의 실증

### <3조에 대한 KAB 해석지침 (G.3.1)>

G.3.1 이 지침에는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G3.1.1 인정된 인증서(Accredited certificate) : 인정마크 또는 문구를 포함하여 인정조건에 따라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 자격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31

G3.1.2 공정/공정성(Fair/Fairness) : 성공을 위한 동등한 기회를 개별 및 모든 평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

G3.1.3 타당/타당성(Valid/Validity) : 평가 프로세스/시험에서 평가되어질 의도로 평가됨 (적격한 성과를 위해 요구되는 지식분야, 기량(skill), 요구되는 물리적 또는 정신적 기여)

G3.1.4 신뢰/신뢰성(Reliable/Reliability) : 평가프로세스/시험에서 일관되게 평가됨

### 4.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 4.1 인증기관

4.1.1 인증기관의 방침 및 절차와 그 운영은 인증에 근거가 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대상자에게 공정하고 공평하여야 하며, 적용 가능한 모든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이 기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자 및 평가대상자의 인증을 방해하거나 금지할 목적으로 절차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1.2 인증기관은 인증의 승인, 유지, 갱신, 범위 확대 및 축소, 그리고 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방침과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4.1.3 인증기관은 인증에 대한 요구사항, 평가 및 결정을 희망 인증 범위와 관련된 사항으로만 한정하여야 한다.

#### <4.1조에 대한 KAB 해석지침 (G.4.1.1 - G.4.1.2)>

G.4.1.1 방침 및/또는 절차의 적용에 있어 예외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항은 정당화되고 문서화되어야 할 것이다.

G.4.1.2 인증기관은 해당 규제 및 법규에 대한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미준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음을 인정기관에게 실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4.2 조직 구조

4.2.1 인증기관은 이해관계자에게 인증기관의 적격성, 공평성 및 성실성에 대하여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특히 인증기관은

a) 신청자, 평가대상자, 인증 받은 자 및 이들의 고용주와 고객에게 독립적이고 공평하여

## 자격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31

야 하며 도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b) 인증의 승인, 유지, 갱신, 범위 확대 및 축소 또는 인증의 정지 및 취소와 관련된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c) 다음 사항에 대하여 총체적 책임을 지는 관리주체(그룹 또는 개인)를 선정하여야 한다.
  - 1) 이 기준, 해당 적격성 표준, 그리고 기타 관련 문서에서 정한 평가, 인증 및 사후관리
  - 2)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기관의 운영에 대한 방침 수립
  - 3) 인증 결정
  - 4) 인증기관의 방침 및 절차의 실행
  - 5) 인증기관의 재정
  - 6) 인증기관을 대신하여 규정된 활동을 수행할 위원회 또는 개인에 대한 권한의 위임
- d) 법인체 또는 법인체의 일부로서, 인증기관이 설립됨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4.2.2 인증기관은 운영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포함하여, 공정성을 보호하는 문서화된 조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 조직구조는 특정 단일 이해관계자의 지배적인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시스템의 내용 및 기능에 관한 방침과 원칙의 개발에 모든 주요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4.2.3 인증기관은 고려 중인 인증의 각 유형에 대하여 인증스킴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 책임을 갖는 위원회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인증스킴위원회에서는 특정 단일 이해관계자의 지배적인 영향없이 인증스킴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의 이해를 공정하고 공정하게 나타내야 한다. 인증스킴이 인증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의해 개발되는 경우, 각 인증스킴 개발자들은 상기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2.4 인증기관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 a) 인증시스템의 운영과 관련 배상책임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확보
- b) 인증활동과 그 이외의 활동을 구분하는 방침 및 절차의 구비
- c) 인증기관에 관련된 기관의 활동이 인증의 기밀유지 및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음을 보장

4.2.5 공정성과 기밀유지가 훼손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이 인원의 평가 및 인증으로부터 독립적임을 실증하지 못한 경우에, 인증기관은 교육훈련을 제안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교육훈련을 준비하는 다른 자/조직을 지원할 수 없다.

4.2.6 인증기관은 인증 받은 자의 활동에 대한 방침 및 절차와 더불어 인증 프로세스 및 기준에 대하여 신청자, 평가대상자, 인증 받은 자 및 이들의 고용주, 그리고 기타 관계자로부터 접수된 이의제기 및 불평/불만의 해결을 위한 방침 및 절차(예 : 행동강령)를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침과 절차는 이의제기 및 불평/불만이 독립적이고 편견없이 해결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 자격인증기관 인정기준

## KAB-R-31

4.2.7 인증기관은 책임 있는 경영진하에 인증업무의 종류와 범위, 그리고 업무량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학력, 교육훈련, 기술적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충분한 인원을 고용 또는 계약하여야 한다.

### <4.2조에 대한 KAB 해석지침 (G.4.2.1 - G.4.2.31)>

#### 조직구성

G.4.2.1 인정은 기준 4.2.1 d)항에 따라 법인에게 한하여 부여되며, 인정된 범위, 인증활동 및 소재지에 국한한다. 모기관의 일부에 해당하는 법인이 인증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이 지침 G.4.2.6에서 G.4.2.8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은 모기관의 다른 부문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고 이해상충이 존재하지 않음을 실증하여야 할 것이다. 인증기관은 모기관의 다른 부문에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정보를 인정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 정보를 최신화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G.4.2.2 인증기관이 기준 4.2.1 d)에 따른 법인체임을 실증함은 신청한 인증기관 자체가 법인체는 아니고 법인체의 일부인 경우, 인정은 그 법인체 전체에 대하여 부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경우, 인정기관은 인증기관과 관련된 특정 심사경로의 추적 및/또는 기록의 검토를 위하여 법인체 전 조직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있다. 실질적인 인증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체의 일부는 법인체와 다른 별개의 명칭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칭은 법인체의 명칭과 함께 인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G.4.2.3 기준 4.2.1 d)의 목적상, 인증기관이 정부의 일부 또는 정부부서인 경우 정부의 지위에 근거하여 법인체로 간주된다. 그러한 인증기관의 지위 및 조직구조는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어야 하며 인증기관은 기준의 모든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G.4.2.4 기준 4.2.2에 따라, 인증기관은 상업적 또는 기타 이유로 인증프로세스의 기밀성, 객관성 또는 공정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주식 및/또는 이사회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정 이해관계자가 인증기관의 설립 재원을 제공하는 경우 이 조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G.4.2.5 기준 4.2.4 a)에서 명시된 재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은 자신이 체결한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정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예상되는 적절한 재정을 보유하고 있음을 실증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경영보고서 또는 의사록, 연례보고서, 재정감사보고서, 재정계획 등 인증업무 수행능력을 실증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인정기관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 인정기관은 인증기관의 재무회계에 대하여 직접적인 심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G.4.2.6 관련기관이라 함은 전체 또는 부분적인 공동 소유를 통하여 인증기관과 연계된 기관 또

## 자격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31

는 이사진의 공유, 계약, 기관 명칭의 공동사용, 직원의 공유, 비공식적 양해관계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인증 결정에 따른 이익을 보장 받거나, 인증프로세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G.4.2.7 관련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활동에 대하여 특정한 제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된 이해상충의 가능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문서화하여야 할 것이다. 인증기관은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기밀성, 객관성 또는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기관 및 이들의 활동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G.4.2.8 인증기관은 실질적인 이해상충을 제거하고 공정성과 관련하여 파악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증사업과 기타 활동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실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실증에는 인증기관 내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관련기관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의 모든 잠재적인 원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이러한 프로세스에 대하여 인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심사에는 고려대상 활동에 대한 인증기관 및 관련기관 모두의 기록을 검토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실제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까지 심사경로의 추적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심사경로의 범위를 고려할 때에는 인증기관의 공평한 인증활동 이력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공평성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잠재적 이해상충에 대한 관리가 재수립되었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심사경로를 관련 기관으로 다시 확대함이 필요하다.

### 조직구조

G.4.2.9 기준 4.2.2에 따라, 인증기관은 공익을 고려하여 각 운영분야에 대한 모든 주요 관계자의 참여가 가능토록 하는 규정이 포함된 문서화된 조직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조직구조는 위원회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직구조는 인증기관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문서에 규정되거나 또는 공정성의 보호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조직구조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타 방법을 통해 인증기관 내 최상위 수준에 공식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이 조직구조의 변경에 대해서는 기준 4.2.2에 의한 위원회 또는 이와 동등한 조직구조로부터의 권고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G.4.2.10 기준 4.2.2에 따라, 인증기관은 인증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주요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파악이 가능한 모든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 단일 이해관계자의 지배적인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도록 이해의 균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수를 제한할 수 있다.

G.4.2.11 기준 4.2.2에 의한 위원회 또는 이와 동등한 조직구조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준 4.2.1 c)에 규정된 각각의 기능에 대하여 총체적 책임을 지는 관리주체는 적정하고 공평한 인증

## 자격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31

을 보장하기 위해 인증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결정 및 조치의 사유와 특정활동에 대한 책임자 선정의 사유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위원회 또는 이와 동등한 조직구조에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들 사안에 대한 위원회 또는 이와 동등한 조직구조의 권고를 인증기관의 관리주체가 존중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 및 이와 동등한 조직구조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인정기관에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G.4.2.12 기준 4.2.1 c) 3)과 관련하여 인증의 승인, 보류 또는 취소에 대한 결정이 결정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대표자가 포함된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인증기관의 운영절차는 이들 대표자가 이해상충이 있음을 표명하고 인증결정에 참여하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G.4.2.13 기준 4.2.1 b)에 따라 인증기관은 인증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인증기관은 이의제기 절차(기준 4.2.6항)를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국제 또는 국내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의제기 패널이나 위원회는 권고를 제시함에 있어 독립적이어야 한다.

G.4.2.14 기준 4.2.2에 규정된 위원회 또는 이와 동등한 조직이 인증스킴위원회에 요구되는 기술적 적격성을 갖추고 있다면 인증스킴 위원회로도 활동할 수 있다.

G.4.2.15 국제 인증스킴, 국내 인증스킴 또는 국가나 지역내 두 개 이상의 인증기관이 사용하는 인증스킴에 대하여 공동 인증스킴위원회가 설립될 수 있다. 그러한 인증기관은 국가 또는 지역내에서 공동 인증스킴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실증하기 위한 절차 및 자원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공평성/독립성

G.4.2.16 인증기관의 공평성과 독립성은 다음을 포함하여 모든 수준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a)조직구조
- b)방침 및 절차
- c)평가
- d)인증에 대한 결정 및 이의제기

G.4.2.17 인증기관은 공평성을 훼손하는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G.4.2.18 인증기관은 적절히 인정 받은 제3자 자격인증기관이 자국내 존재하거나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한 경우 자신이 고용한 자에 대하여 인증을 수행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인증기관이 자신이 고용한 자에 대하여 인증을 수행한다면, 인증기관은 그러한 상황에서 공평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채택한 절차를 인정기관에게 실증하여야 한다. 이

## 자격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31

러한 절차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a) 모든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동일한 기밀유지 및 평가 기준 유지
- b) 독립적인 시험위원의 활용
- c) 인증프로세스에 대한 독립적인 모니터링

G.4.2.19 기준 4.2.5와 5.1.2에 따라, 최근 2년 이내 평가대상자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교육훈련활동에 참여한 인원은 인증프로세스의 일부인 평가를 수행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G.4.2.20 인증기관은 평가대상자 시험에 대한 공평성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으로 드러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공표하도록 시험위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공평성이 훼손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러한 상황을 파악 및 평가하고 책임과 업무를 배정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G.4.2.21 기준 4.2.7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영진, 직원 및/또는 인원이 해당 인증기관에만 고용될 필요는 없으나, 이들의 다른 고용관계가 공평성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G.4.2.22 "인원"에는 계약에 따라 인증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기타 외부자원이 포함될 수 있다. 인증기관은 이러한 인원이 인증기관의 직원, 계약에 의해 고용된 자 또는 외부 기관에서 제공한 자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 모두에 대한 성과를 관리 및 통제하고 그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특정 분야에서 인증기관이 활용하는 모든 인원에 대한 적절성을 관리하는 포괄적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G.4.2.23 인증기관은 관련기관, 위탁계약자, 외부 시험위원이 서약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음을 보장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인증기관은 또한 그러한 위반사항이 파악된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의 실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교육훈련

G.4.2.24 인증기관은 평가와 관련된 모든 외부계약자 또는 외부 시험위원에게 기준 4.2.4 c)에 따라 이들의 활동을 마케팅하고 제공함에 있어 이 지침 G.4.2.25와 G.4.2.26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동등한 보증을 요구하여야 한다.

G.4.2.25 학력 및 교육훈련이 인증을 위한 사전 요구사항이거나 시험준비 안내서의 일부를 구성한다면, 인증기관은 학력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인증스킴과 관련하여 알려진 모든 교육 및 교육훈련에 대한 사전 요구사항은 목록화되고 공개적으로 이용가능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증기관은 특정 학력/교육훈련 서비스를 받으면 인증이 간단 또는 용이해지거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제안을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 자격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31

G.4.2.26 인증기관이 인증과 학력/교육훈련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두 서비스를 이용 하면 신청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 인증프로세스가 공평하고 또한 공평하게 보여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G.4.2.27 인증기관은 평가 결과를 설명하고/하거나 규범문서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으나, 평가의 일부로서 지시적인 조언이나 교육훈련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이 신청자 또는 평가대상자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일반적인 정보교환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 이의제기 및 불평/불만

G.4.2.28 기준의 4.2.6에 따른 방침 및 절차는 모든 이의제기 및 불평/불만이 건설적이고 시기 적절하게 처리됨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증기관이 그러한 절차를 통하여 해당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불평/불만 제기자나 관련 기타 관계자가 인증기관에서 제안한 절차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인증기관의 절차는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의제기 절차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a)이의제기자가 공식적으로 해당 사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
- b)이의제기 프로세스의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적인 요소 또는 기타 방법의 제공
- c)이의제기의 처리결과와 그 사유를 이의제기자에게 서면으로 제공
- d)이의제기 프로세스에 소요되는 기한을 명확히 규정

인증기관은 모든 이해 관계자가, 적절한 경우, 이의제기 프로세스와 후속절차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G.4.2.29 관리자를 포함한 인증기관의 인원이 신청자 또는 평가대상자에 대한 인증프로세스에 관여했거나, 최근 2년 이내 신청자 또는 평가대상자를 위한 교육훈련에 관여하였거나, 또는 이의제기 및 불평/불만의 원인이 되었던 활동에 사전 관여하였던 경우, 이러한 인원은 이의제기 또는 불평/불만에 대한 결정에 관여해서는 안될 것이다.

G.4.2.30 이의제기 및 불평/불만은 부적합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한 정보이다. 불평/불만이 접수된 경우, 인증기관은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해당되는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G.4.2.31 인증기관은 그러한 조사를 통해 시정 및/또는 시정조치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a)부적합에 따른 영향 최소화
- b)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인증 요구사항의 충족
- c)부적합 재발 방지
- d)취해진 시정 또는 시정조치의 유효성 평가

## 4.3 인증스킴의 개발 및 유지

## 자격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31

4.3.1 인증기관은 평가대상자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방법과 메커니즘을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기관은 평가 방법과 메커니즘의 초기 개발 및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적절한 방침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비 고 [부속서 1]은 인증스킴의 개발 및 유지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4.3.2 인증기관은 인증스킴의 개발 및 유지를 위한 프로세스를 규정하여야 하며, 이 프로세스에서는 인증스킴위원회를 통하여 인증스킴의 검토와 타당성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3.3 인증기관은 해당되는 경우 인증 요구사항의 변경내용을 인증스킴위원회에 적절한 기간 내에 정해진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변경사항의 정확한 형식 및 발효일자를 결정하기 전에 인증스킴위원회가 표명한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변경된 요구사항의 결정과 이의 공포 후, 인증기관은 해당되는 경우 이해관계자와 인증 받은 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적절히 통보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인증스킴위원회와의 협의하에 인증기관에게 합리적으로 고려되는 기간 내에 인증 받은 자가 변경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여야 한다.

4.3.4 인원의 적격성 평가기준은 이 인정기준 및 기타 관련 문서에 따라 인증기관이 규정한 것이어야 한다. 이 문서를 특정 인증스킴에 적용함에 있어 설명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설명은 전문가들이 개발하고 인증스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인증기관이 공포하여야 한다.

4.3.5 특정 협회 또는 그룹의 회원가입과 같은 부당한 재정적 또는 기타 제약조건을 이유로 인증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승인된 교육훈련 과정의 성공적인 수료가 인증스킴의 요구사항이 될 수 있으나 인증기관에 의한 교육훈련 과정의 인정/승인이 공평성을 훼손하거나 평가 및 인증 요구사항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4.3.6 인증기관은 평가대상자에 대한 시험방법을 평가하여야 한다. 시험은 공정하고 타당하며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적절한 방법 및 절차(예를 들어 통계자료의 수집 및 유지)가 각 시험의 공정성, 타당성, 일반성과 및 모든 파악된 결함의 시정상태를 적어도 매년 재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 <4.3조에 대한 KAB 해석지침 (G.4.3.1 - G.4.3.11)>

G.4.3.1 인증기관이 인증스킴 요구사항의 일부로서 교육훈련과정을 승인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그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수료한 자들이 인증스킴에 명시된 지식 및 기량(skill)과 관련한 교육훈련 목표를 충족함을 보장하도록 교육훈련 제공기관(자)에게 요구해야 한다.

## 자격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31

- G.4.3.2 인증기관은 사전 요구사항, 적격성 및 기타 요구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구사항은 공정하고 적정함을 보장하기 위해 인증스킴과 관련된 데이터 및/또는 전문가 의견에 근거하고 있음을 제시하여야 한다.
- G.4.3.3 인증스킴 위원회는 인증 받은 자에 대한 적격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인증기준은 전문적으로 채택된 표준, 관행 및 법적 요구사항과 일관된다는 증거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적격성 평가를 위해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을 개발할 때 국가 또는 국제 표준이 이용가능한 경우에는 이 표준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G.4.3.4 타당성 확인이라 함은 스킴의 내용을 지지하는 전문가와의 인터뷰, 인증기관이 정한 모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또는 일반적으로 채택되어진 규범문서와 같은 매카니즘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취합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 G.4.3.5 인증기관은 인증스킴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 및 수정, 변경사항의 실행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이를 통보하기 위한 방침 및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G.4.3.6 인증기관은 형평성, 타당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험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기록을 보유하여야 할 것이다.
- G.4.3.7 인증기관은 스킴위원회가 다음 사항들을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a) 수립된 적격성 요구사항이 인증의 공포된 범위와 일관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일치한다.
  - b) 스킴(시험, 시험프로세스, 갱신 등을 포함)이 그 스킴의 특정한 적격성 기준에 적절한 평가대상자의 적격성을 평가한다.
- G.4.3.8 품질경영체제 내부심사원은 품질경영체제 문서의 실행 및 내부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동 기준 4.3.4에 따라 품질경영체제 내부심사원에 대한 자격인증기관은 최소한 [부속서 2]를 만족하는 품질경영체제 내부심사원 적격성평가 기준을 설정 및 확보하여야 한다.
- G.4.3.9 품질경영체제 컨설턴트는 특정 조직이 품질경영체제를 구축 및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 품질경영의 실현을 위하여 지원, 교육, 자문 및/또는 진단·평가하는 자로서, 동 기준 4.3.4에 따라 품질경영체제 컨설턴트에 대한 자격인증기관은 [부속서 3]을 만족하는 품질경영체제 컨설턴트 적격성평가 기준을 설정 및 확보하여야 한다.

## 자격인증기관 인정기준

## KAB-R-31

G.4.3.10 환경경영체제 내부심사원은 환경경영체제 문서의 실행 및 내부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동 기준 4.3.4에 따라 환경경영체제 내부심사원에 대한 자격인증기관은 최소한 [부속서 4]를 만족하는 환경경영체제 내부심사원 적격성평가 기준을 설정 및 확보하여야 한다.

G.4.3.11 환경경영체제 컨설턴트는 특정 조직이 환경경영체제를 구축 및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 환경경영의 실현을 위하여 지원, 교육, 자문 및/또는 진단·평가하는 자로서, 동 기준 4.3.4에 따라 환경경영체제 컨설턴트에 대한 자격인증기관은 [부속서 5]를 만족하는 환경경영체제 컨설턴트 적격성평가 기준을 설정 및 확보하여야 한다.

### 4.4 경영시스템

4.4.1 인증기관은 문서화되고 이 기준의 모든 요구사항을 포함하며, 요구사항이 효과적으로 적용됨을 보장하는 경영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비 고 이 기준의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는 KS Q ISO 9001에 근거하여 문서화된 품질경영체제는 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4.4.2 인증기관은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a) 경영시스템이 이 기준에 따라 수립되고 유지됨.
- b) 경영시스템이 조직의 모든 계층에서 이해되고 실행됨.

4.4.3 인증기관은 지속적 개선,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문서관리, 내부심사, 경영검토시스템을 실행하고 있어야 한다.

### 4.5 위탁계약

4.5.1 인증기관이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외부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예를 들어 시험), 기밀유지 및 이해상충 예방 등에 대한 내용이 적절히 포함된 문서화된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 결정은 위탁되어서는 안 된다.

4.5.2 인증기관은

- a) 위탁한 업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인증의 승인, 유지, 갱신, 범위확대 및 축소, 그리고 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 b) 위탁 받은 자가 해당 업무수행에 적격하고 이 기준의 해당 조항을 준수하며, 기밀유지 및 공정성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교육훈련 또는 인증의 유지에 직접 또는 그들의 고용주를 통하여 관여하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 자격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31

- c) 위탁받은 자의 목록을 유지하며,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그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 <4.5조에 대한 KAB 해석지침 (G.4.5.1 - G.4.5.3)>

G.4.5.1 위탁계약기관/자가 기준의 모든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이라는 협정을 인증기관과 맺은 경우, 인증기관은 당해 위탁계약기관/자에 위탁된 업무(예. 행정, 시험개발 또는 시험시행)를 근거로 하여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협정서에는 최소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 a) 제공하는 서비스 및 그 결과에 대한 자세한 기술
- b)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평성, 기밀성 및 성실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관리조치
- c) 위탁계약기관/자가 수행해야 할 내부 모니터링 요구사항
- d) 인증기관 또는 기타 적정한 대리자에 의해 수행되어지는 평가 프로세스
- e) 협정서에 규정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이 권한을 부여한 인원(예를 들어 시험위원)의 성명
- f) 협정서를 승인한 대표자의 성명과 서명

위탁계약기관/자가 모든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던 평가 및 모니터링 활동에 관한 기록은 이용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G.4.5.2 두개 이상의 인증기관이 하나의 위탁계약기관/자에 대하여 공동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각 인증기관은 해당 인증기관과 관련된 모든 평가가 만족스럽게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G.4.5.3 시험이 교육훈련 제공자에게 위탁된 경우, 인증프로세스의 일부인 시험과 교육훈련을 구분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기준 4.2.5).

## 4.6 기록

4.6.1 인증기관은 인증 받은 자의 자격사항을 확인하는 방법과 함께 인증기관의 특정 상황에 적합하고 법규에 부합하는 기록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록은, 특히 신청서, 평가 보고서, 사후관리 활동 및 인증의 승인, 유지, 갱신, 범위 확대 및 축소, 그리고 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기타 문서와 관련하여 인증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음을 실증하여야 한다.

4.6.2 기록은 인증프로세스의 성실성과 정보의 기밀유지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식별되고 관리되며 처분되어야 한다. 기록은 적어도 1회의 전 인증 주기에 대하여 지속적인 신뢰를 실

## 자격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31

증하거나 인정협정, 계약, 법규 또는 기타 의무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기간 동안 보존되어야 한다.

### <4.6조에 대한 KAB 해석지침 (G.4.6.1 - G.4.6.2)>

G.4.6.1 인증 받은 자의 자격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써, 인증기관은 최소한 다음 정보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자격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는 경우 제한 또는 차별 없이 이에 응답하여야 할 것이다.

- a)인증 발효일자 및 만료일자
- b)인증 받은 자의 성명 및 인증 번호
- c)인증 규범문서를 포함한 인증범위

G.4.6.2 기록은 다음과 같아야 할 것이다.

- a)검색 가능한 방법으로 유지
- b)손상 및 훼손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보관
- c)고유하게 식별

## 4.7 기밀유지

인증기관은 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위임을 통하여 인증기관의 활동 프로세스에서 획득한 모든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임은 인증기관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외부 기관 또는 개인과 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인증기관의 모든 인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법규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의 출처인 기관 또는 개인의 서면 동의 없이 획득한 정보를 권한이 없는 관계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법규에 의해 인증기관이 획득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 제공될 정보에 대해 당해 기관 또는 개인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 <4.7조에 대한 KAB 해석지침 (G.4.7.1 - G.4.7.2)>

G.4.7.1 기밀유지에 대한 요구사항은 인증기관의 정보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위탁 계약된 인원도 또한 이러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히 자신의 직장 동료 및 고용주에 대해서도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G.4.7.2 인증기관은 정보의 유지 및 배포에 대한 방침과 절차 및/또는 법적 요구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 4.8 보 안

## 자격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31

인증기관 또는 위탁계약자는 기밀유지를 위하여 모든 시험 및 시험관련 사항을 사용기간 동안 안전한 환경에서 유지하여야 한다.

### <4.8조에 대한 KAB 해석지침 (G.4.8.1 - G.4.8.3)>

G.4.8.1 인증기관은 시험자료의 운반 및 취급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인증시스템 내에서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G.4.8.2 보안조치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a) 시험문제의 안전한 보관
- b) 전자데이터의 보호

G.4.8.3 인증기관이 교육훈련제공자에게 시험을 위탁한 경우 공정성 및/또는 보안성에 훼손을 줄 수 있는 내재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인증기관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특별한 주의에는 예를 들어 시험자료와 교육훈련자료를 분리하기 위한 절차와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다.

## 5. 고용 또는 계약된 인증기관 인원에 대한 요구사항

### 5.1 일반사항

5.1.1 인증기관은 인증프로세스에 관여하는 고용 또는 계약된 인원에 대한 적격성 요구사항을 인증프로세스에 규정하여야 한다.

5.1.2 인증기관은 고용 또는 계약된 인원에게 인증기관이 정한 규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문서에는 기밀유지, 상업적 및 기타 이해관계로부터, 그리고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시험 응시자와의 과거 및/또는 현재의 관계로부터의 독립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5.1.3 인증기관은 고용 또는 계약된 인원의 직무와 책임이 명확히 기술된 지침서를 해당 인원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지침서는 항상 최신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인증 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인원은 해당업무에 대하여 규정된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는 적절한 학력, 경험 및 기술적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 인원은 이들의 특정 책임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제공되는 인증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5.1.4 인증기관은 고용 또는 계약된 인원에 대한 개개인의 관련 자격을 문서화하고 이를 최신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고용 또는 계약된 인원은 문서화된 자격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정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자격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31

- a) 성명 및 주소
- b) 소속기관 및 직위
- c) 학력 및 경력사항
- d) 관련 분야에서의 경험 및 교육훈련
- e) 인증기관 내에서의 이들의 특정 책임 및 의무
- f) 업무성과의 평가
- g) 최근의 기록갱신 일자

### <5.1조에 대한 KAB 해석지침 (G.5.1.1 - G.5.1.3)>

G.5.1.1 인증기관은 다음을 수행하는 데 적격한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a) 신청서 검토
- b) 시험위원의 선정 및 권한 부여
- c) 시험의 준비, 관리, 모니터링, 배점 및 평가
- d) 위탁계약자(예를 들어 시험센터)의 평가
- e) 부적합사항, 이의제기 및 불평/불만 처리
- f) 인증 결정
- g) 경영시스템의 실행 및 유지

G.5.1.2 인증기관의 경영진은 개개인이 인증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적격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자원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개개인의 적격성은 검증된 경력, 특정 교육훈련 또는 브리핑을 통하여 부여될 수 있다. 인증기관은 당해 기관이 활용하는 모든 인원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G.5.1.3 인증기관은 당해 기관의 인원이 배정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인증기관은 이러한 인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필요성과 그러한 필요성을 충족하는 방법을 파악하고 문서화하는 시스템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 5.2 시험위원회에 대한 요구사항

5.2.1 시험위원회는 해당 적격성 표준 및 기타 관련문서에 근거한 인증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시험위원 선정프로세스는 시험 전체 또는 일부에 배정된 시험위원이 적어도 다음과 같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 a) 관련 인증스킴을 숙지하고 있음.
- b) 관련 시험 방법 및 시험 문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
- c) 시험 대상 분야에 대한 적절한 적격성을 갖추고 있음.
- d) 시험과 관련된 언어를 쓰고 말하는 데 능숙함.

## 자격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31

e) 공평하고 차별을 두지 않는 판단(평가)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임.

5.2.2 시험위원이 평가대상자의 시험에 있어서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있을 경우, 인증기관은 시험의 기밀유지와 공평성이 훼손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4.2.5 참조). 이러한 조치들은 기록되어야 한다.

### <5.2조에 대한 KAB 해석지침 (G.5.2.1 - G.5.2.3)>

G.5.2.1 시험위원에게 요구되는 쓰고 말하는 언어의 구사 정도는 다양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기대하는 평가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언어 적격성을 사전에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G.5.2.2 인증기관은 시험위원의 활동 및 업무수행성과를 평가하고 모니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평가 및 모니터링에는 모든 관련 인증프로세스 동안 시험위원의 활동을 입회하는 것이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G.5.2.3 감독관, 모니터들과 같이 시험 시행을 모니터하고 지원하는 인원은 인증기관이 규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6. 인증프로세스

### 6.1 신청

6.1.1 인증기관은 각 인증스킴(수수료 포함)에 해당하는 인증프로세스와 인증 요구사항, 신청자의 권리 및 해당하는 경우 행동강령과 함께 인증 받은 자의 의무를 포함하는 문서에 대한 최신 세부 설명을 요청 시 제공하여야 한다(6.6.2 참조).

6.1.2 인증기관은 신청자에게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a) 희망하는 인증 범위
- b) 인증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평가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는 진술
- c)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 및 입증되는 관련 자격에 대한 세부사항
- d) 신청자의 일반 정보(예를 들어 성명, 주소 및 신청자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기타 정보)

### <6.1조에 대한 KAB 해석지침 (G.6.1.1)>

G.6.1.1. 인증프로세스에 기술되어야 할 세부사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a) 적격성 요구사항
- b) 해당되는 경우, 사전 자격 기준

## 자격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31

- c) 신청 요구사항
- d) 시험 및 평가 프로세스의 유형 및 성격
- e) 인증의 승인, 유지, 갱신, 확대 및 축소 조건
- f) 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 조건

### 6.2 평가

6.2.1 인증기관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a) 인증기관은 신청 받은 인증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
- b) 인증기관은 언어 및/또는 장애와 같은 신청자의 특별한 요구가 타당할 경우 이를 인지하고 수용할 수 있음.
- c) 신청자가 인증스킴에 규정된 학력, 경험 및 교육훈련 요구사항을 갖추고 있음.

6.2.2 인증기관은 인증스킴의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필기, 구두, 실기, 관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적격성을 시험하여야 한다.

6.2.3 시험은 평가대상자의 적격성 확인을 위하여 문서화된 충분한 증거를 통하여 모든 인증스킴 요구사항이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검증됨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계획되고 구성되어야 한다.

6.2.4 인증기관은 시험의 성과 및 결과를 포함하여 평가의 성과 및 결과가 적절하고 종합적으로 문서화됨을 보장하는 보고절차를 구비하여야 한다.

#### <6.2조에 대한 KAB 해석지침 (G.6.2.1 - G.6.2.2)>

G.6.2.1 읽기에 도움주거나, 시험시간을 연장하거나, 큰 활자체로 구성된 시험문제와 같이 시험과 관련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방침 및 절차는 문서화되어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용 가능하여야 하며,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신청자의 장애가 인증스킴하에서 인증을 금지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 한, 이들에게 특별한 요구에 따른 시험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G.6.2.2 평가 대상자의 평가 결과와 관련된 보고서는 G.4.2.27을 고려하여 향후 시험을 준비하는 평가대상자에게 지침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하여야 할 것이다.

### 6.3 인증결정

6.3.1 평가대상자에 대한 인증결정은 인증프로세스 동안에 얻어진 정보를 근거로 하여 인증기관이 내려야 한다. 인증 결정을 내리는 자는 평가대상자의 시험 또는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 자격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31

않은 자이어야 한다.

6.3.2 인증기관은 인증 받은 모든 자에게 인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인증서의 단독 소유권을 유지하여야 한다. 인증서는 인증기관의 책임자가 서명하거나 승인한 문서, 카드 또는 기타 매체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6.3.3 인증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인증 받은 자의 성명과 고유 자격인증번호
- b) 인증기관명
- c) 인증의 근거가 되는 적격성 또는 기타 관련 문서의 인용(발행판 포함)
- d) 유효조건 및 제한사항을 포함한 인증 범위
- e) 인증 발효일자 및 만료일자

### <6.3조에 대한 KAB 해석지침 (G.6.3.1 - G.6.3.7)>

G.6.3.1 다음을 위하여 인증프로세스를 통해 충분한 정보가 수집되어야 할 것이다.

- a) 인증기관이 정보에 근거하여 인증 결정
- b) 예를 들어 이의 또는 불평/불만이 제기될 경우에 대비하여 추적성 확보
- c) 인증요구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적합성 보장

G.6.3.2 인증기관은 의사결정의 근거로서 평가프로세스 이외의 출처로부터 나온 정보를 평가프로세스에 대한 정보와 함께 평가대상자에게 공지하여야 할 것이다. 인증기관은 평가대상자에게 동 정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G.6.3.3 인증기관에서 인증의 승인/취소를 결정하는 자(들)는 인증프로세스에서 획득한 정보를 평가하는데 충분한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G.6.3.4 인증기관은 모든 인증 요구사항이 충족되고 인증기관이 이를 검증할 때까지 인증이 승인되지 않아야 한다. 인증기관은 완료사항 및/또는 시정사항 그리고 평가 동안에 취해진 해결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할 것이다.

G.6.3.5 인증기관이 다른 기관에 의하여 이전에 수행된 업무를 고려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그 기관이 기준의 요구사항과 인증기관이 규정한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실증하는 모든 관련 보고 및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G.6.3.6 적합성 평가에 대한 IAF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인증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이 인정 조건 및 범위에 따라 인증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그러한 인증서는 인정기관과 발행 인증기관을 명확히 식별하여야 한다.

## 자격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31

G.6.3.7 인증기관이 인증범위에 대하여 두개 이상의 인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인정된 당해 인증기관의 인증서는 적어도 하나의 인정기관을 식별하여야 한다.

### 6.4 사후관리

6.4.1 인증기관은 인증스킴의 관련 조항에 대한 인증 받은 자의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사후관리 프로세스를 규정하여야 한다.

6.4.2 인증기관은 인증스킴에 따라 인증 유지 절차 및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후관리 활동의 내용 및 빈도를 포함한 조건들은 인증스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건은 인증 받은 자의 지속적인 적격성을 확인하는 데에 공평한 평가임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 <6.4조에 대한 KAB 해석지침 (G.6.4.1 - G.6.4.4)>

G.6.4.1 사후관리라 함은 인증주기 사이에 인증스킴에 대한 지속적인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증 받은 자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을 말한다.

G.6.4.2 인증스킴에 따라, 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 a)현장 평가
- b)규제당국으로부터의 정보
- c)시험을 통한 전문성 개발
- d)이해 관계자로부터의 불평/불만 및 정보
- e)체계화된 인터뷰
- f)인증 받은 자에 대하여 취해진 법적 조치
- g)지속적으로 만족스러운 업무수행 및 업무경력 기록의 확인
- h)시험
- i)신체적 능력의 확인

G.6.4.3 인증기관은 사후관리 동안 적격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인증이 취소 및 정지되는 상황 및 조건을 규정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G.6.4.4 사후관리 방법 및 빈도는 인증스킴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사후관리 목적에 적절하여야 한다.(G.6.4.1 참조)

G.6.4.5. 상기 정지 및 취소 상황 및 조건에는 인증된 자가 인증제도를 혼탁시키는 행위를 한 경

## 자격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31

우(예: 컨설턴트가 인증기관, 심사원 또는 기업과 결탁하여 부당한 금전적 거래를 한 경우)도 포함되어야 한다.

### 6.5 갱신

6.5.1 인증기관은 인증 받은 자가 현재 적용 중인 인증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격성 표준 및 기타 관련문서에 따라 갱신 요구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6.5.2 인증기관은 인증스킴에 따라 자격인증 유지를 위한 절차 및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갱신 활동의 내용 및 빈도를 포함한 조건은 인증스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건은 인증 받은 자의 지속적인 적격성을 확인하는 데에 공평한 평가임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 <6.5조에 대한 KAB 해석지침 (G.6.5.1 - G.6.5.3)>

G.6.5.1 갱신이라 함은 현재의 인증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인증기관의 인증스킴 위원회는 갱신주기에 대한 근거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근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될 수 있다.

- a)인증스킴이 제공되는 산업계의 성숙도 및 관련 위험성
- b)지식 체계의 변화
- c)설문조사 데이터
- d)이해 관계자의 요구사항
- e)전문가의 의견
- f)규제 요구사항

G.6.5.2 인증스킴에 따라, 인증기관의 갱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 a)현장 평가
- b)시험을 통한 전문성 개발
- c)체계화된 인터뷰
- d)지속적으로 만족스러운 업무수행 및 업무경력 기록의 확인
- e)시험
- f)신체적 능력의 확인

G.6.5.3 갱신 방법 및 빈도는 적용되는 규범 기준을 고려하여 인증스킴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갱신의 목적에 적절하여야 한다(G.6.5.1 참조). 최초 인증시 적격성을 평가하는 시험에 실습이 포함된 경우 갱신프로세스에는 인증기관이 관리하는 실습시험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자격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31

### 6.6 인증서 및 로고/마크의 사용

6.6.1 인증 마크 또는 로고를 제공하는 인증기관은 사용 조건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사용방법 및 표시에 대한 권리를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6.6.2 인증기관은 인증 받은 자로 하여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명을 통한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a) 인증스킴의 관련 규정을 준수함.
- b) 부여된 인증범위에 한정하여 인증에 관한 권리를 주장함.
- c) 인증기관의 명예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증을 활용하지 않으며,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기관이 승인하지 않거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을 것임.
- d) 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시 인증기관 또는 인증의 인용을 포함하는 인증에 대한 권리의 이용을 중단하고,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반환함.
- e) 오해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음.

6.6.3 인증기관은 인증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언급하거나 인증서 및 출판물, 카탈로그 등에서의 인증서 및 마크 또는 로고에 대한 오용에 대해서 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 위반행위의 공표 및 필요한 경우 부가적인 법적 조치와 같은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6.6조에 대한 KAB 해석지침 (G.6.6.1 - G.6.6.5)>

G.6.6.1 인증기관은 서로 다른 적합성 평가 시스템을 표시하기 위하여 동일한 마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여러 개의 마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각 마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서로 다른 적합성 평가 시스템에 대한 각기 다른 마크에 대하여 동일한 법인 로고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G.6.6.2 인증기관은 마크사용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와 인증에 대한 부적절한 주장 및 마크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 등 마크의 오용에 대하여 인증기관이 준수해야 할 문서화된 절차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G.6.6.3 인증기관이 인정이 승인되기 전에 당해 기관이 발행한 인증서가 인정된 것으로 허위 주장하는 경우, 인정기관은 인증기관에게 당해 인증서의 철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G.6.6.4 인증기관은 인증 받은 자가 인증기관의 마크를 고용주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가 혼동을 야기시킬 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보장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G.6.6.5 인증기관이 사용하는 마크가 다른 기관(예를 들면 마크를 소유한 기관)이 양도한 것이

## 자격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31**

---

---

라면, 인증기관은 당해 기관과의 협정을 통하여 기준 6.6의 모든 조항이 갖는 의도에 적합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 자격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31

### [부속서 1] 인증스킴의 개발 및 유지

- A.1 인증스킴은 정부의 특정 요구사항(예를 들어 공공의 보호) 또는 실증된 시장의 요구/욕구(예를 들어 직업분야에 대한 신뢰성, 확신, 그리고 개선)에 응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A.2 인증스킴을 제안한 인증기관 또는 조직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 인증대상이 되는 특정 분야에 대한 기술
  - 사후관리 및 갱신을 포함하여 자격/적격성 요구사항 및 평가 요구사항과 절차에 대한 기술
  - 인증스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지원 정도와 인증스킴 내용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수용 증거
  - 제안된 인증스킴의 개발에 책임을 갖는 대상 조직/기관/개인
- A.3 다음 사항을 도출 또는 확인하기 위하여 직무/실무 분석을 정기적으로(최소 매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 목표로 하는 평가대상자 모집단에 대한 기술과 인증의 목적 또는 의도된 결과에 대한 진술
  - 해당 직업분야의 적격한 인원이 수행하는 주요 핵심 작업 목록
  - 인증 요구사항의 목록(각 요구사항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선택된 평가 메커니즘을 포함함.)
  - 시험 구성에 대한 시방서(공식적인 구두 또는 필기시험이 평가프로세스의 일부분으로 구성되는 경우, 내용에 대한 개요, 출제된 문제의 종류, 난이도, 각 주제별 문항의 수, 시험 시간, 합격 점수를 정하는 방법, 채점 방법 등을 포함함.)
  - 제안된 인증스킴이 시장 투명성을 달성하는 방법에 관한 의견
- A.4 모든 메커니즘은 자격인증 업무 및 관련 주제를 숙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데 능숙한 인원에 의하여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 A.5 모든 시험은 시험시방서에 적합하고 일관된 적용을 보장하며, 편견 없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A.6 인증기관은 시험의 객관성 및 기밀유지를 위하여 시험문제의 순환사용 또는 개정에 관한 관리를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 자격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31

### [부속서 2] 품질경영체제 내부심사원의 최소 자격기준

동 기준 G4.3.8에 따라 품질경영체제 내부심사원의 자격기준은 최소한 다음의 각 호 이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개인적 특성 : 내부심사원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 윤리적, 관찰력, 통찰력, 유연성, 집요함, 결단력, 자립적, 개방적, 외교적, 의사소통능력, 실용적, 책임성, 협조적
2. 연수과정 수료 및 시험합격 : 자격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인정된 내부심사원 양성과정 또는 품질경영체제 심사원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KAB가 인정된 품질경영체제 내부심사원 자격인증기관(이하 '내부심사원 자격인증기관'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자격인증 신청기한은 시험합격 후 3년 이내로 한다.
3. 학력 요건 : 고졸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4. 실무경력 요건 :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중 2년 이상의 품질경영체제 구축, 이행, 유지 또는 내부심사 경험을 보유하여야 한다. 단, 실무경력 기간은, 2년제 대학졸업의 경우 2년, 4년제 대학졸업의 경우 4년을 단축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산업공학 분야의 학사 학위이상 소지자의 경우, 품질경영체제 구축, 이행, 유지 또는 내부심사 경험 보유기간 2년 이상에서 1년 단축 적용할 수 있다. 품질경영체제 구축, 이행, 유지 또는 내부심사 경험은 자격신청이전 6년 이내에 수행한 경력이어야 한다.
5. 심사경험 : 품질경영체제 내부심사 또는 제3자 품질경영체제 인증심사의 전과정에 참여하여 2회 4일 이상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여야 한다. 심사경험은 자격인증 신청 이전 6년 이내에 수행한 경험이어야 한다.
6. 자격 유효기간 및 유지 : 품질경영체제 내부심사원의 자격은 자격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자격인증기관이 규정한 소정의 교육(세미나, 워크숍 등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 자격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31

### [부속서 3] 품질경영체제 컨설턴트의 최소 자격기준

동 기준 G 4.3.9에 따라 품질경영체제 컨설턴트의 자격기준은 최소한 다음의 각 호 이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개인적 특성 : 품질경영체제 컨설턴트는 최소한 ISO 10019에 규정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 윤리적, 관찰력, 통찰력, 유연성, 집요함, 결단력, 자립적, 의사소통능력, 실용적, 책임성, 협조적
2. 학력 요건 : 대학교 졸업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에 상응하는 경력이란 고등학교 졸업의 경우 4년 이상, 2년제 대학 졸업의 경우 2년 이상 기업체, 연구소, 단체 등에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KAB로부터 인정된 심사원 자격인증기관에 등록된 품질경영체제 인증심사원의 학력요건에 대한 적합성 입증은 인증심사원 자격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실무경력 요건 :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 실무경력의 산정기준은 다음 3.1 내지 3.6항 중에서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경력은 자격인증 신청이 전의 최근 10년 이내 수행한 경력으로 한다.

#### 3.1 제3자 인증심사경력

품질경영체제(KS Q ISO 9001, TL 9000, TS 16949, AS9100 등)에 대한 제3자 인증심사의 전과정에 30회 120일 이상 참여한 심사경력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다음의 품질경영체제 컨설팅 경력 또는 품질경영체제 구축 및 유지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가. 컨설팅 경력 : 품질경영체제(KS Q ISO 9001, TL 9000, AS 9100 등) 구축 및 유지 등에 관한 자문서비스를 해당 프로젝트의 리더 또는 단독으로 최소 1회(자문일수가 최소 10일 이상) 이상 제공한 경력

나. 품질경영체제 구축 및 유지경력 : 조직에서 품질경영체제(KS Q ISO 9001, TL 9000, TS 16949, AS9100 등) 구축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전담부서에서 최소 1년 이상 직접적으로 수행한 경력

#### 3.2 컨설팅 경력

품질경영체제(KS Q ISO 9001, TL 9000, TS 16949, AS 91000 등) 구축 및 유지 등에 관한 자문서비스를 10회(자문일수는 160일 이상 포함) 이상 제공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 자격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31

이 경력에는 해당 프로젝트의 리더 또는 단독으로서 최소 3회(자문일수가 최소 60일 이상) 이상 제공한 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3.3 품질경영체제 구축 및 유지 경력

품질경영체제(KS Q ISO 9001, TL 9000, TS 16949, AS 91000 등) 구축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전담부서에서 4년 이상 직접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3.4 강의 경력

‘가’항내지 ‘다’항의 요구사항 중 1개를 충족하여야 하며, 아울러 ‘라’항 중 ①내지 ②항 중 1개 또한 충족하여야 한다.

가. 인증심사원 자격인증기관의 장이 승인한 KS Q ISO 9001 인증심사원양성과정의 전임 강사로서 7회 140시간 이상 강의를 수행한 경력.

나. TL 9000, TS 16949 또는 AS9100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의 강사로서 7회 140시간 이상 강의를 수행한 경력

다.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산업공학 및 품질경영에 관한 강의를 5년 이상(강의시간은 100시간 이상) 이상 수행한 경력.

라. 컨설팅 경력 또는 품질경영체제 구축 및 유지경력

① 품질경영체제(KS Q ISO 9001, TL 9000, AS 9100 등) 구축 및 유지 등에 관한 자문서비스를 해당 프로젝트의 리더 또는 단독으로서 최소 3회(자문일수가 최소 60일 이상) 이상 제공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조직에서 품질경영체제(KS Q ISO 9001, TL 9000, TS 16949, AS9100) 구축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전담부서에서 최소 2년 이상 직접적으로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3.5 저술경력

품질경영체제(KS Q 9001, TL 9000, TS 16949, AS 91000 등) 또는 품질경영 분야의 이론 또는 기법 등에 관한 전문책자를 3권 이상 저술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중 적어도 2권은 단독으로 저술하여야 한다. 단, 책자는 ISBN 등록을 한 책자 및 박사학위 이상의 자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공인된 학술지에 등록된 논문으로 한정한다. 아울러 다음의 품질경영체제 컨설팅 경력 또는 품질경영체제 구축 및 유지경력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가. 컨설팅 경력 : 품질경영체제(KS Q ISO 9001, TL 9000, AS 9100 등) 구축 및 유지 등에 관한 자문서비스를 해당 프로젝트의 리더 또는 단독으로서 최소 3회(자문일수가

## 자격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31

최소 60일 이상) 이상 제공한 경력

- 나. 품질경영체제 구축 및 유지경력 : 조직에서 품질경영체제(KS Q ISO 9001, TL 9000, TS 16949, AS9100 등) 구축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전담부서에서 최소 2년 이상 직접적으로 수행한 경력

### 3.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로 등록된 자로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중소기업의 경영관리(정보화 분야 포함)시스템의 구축 및/또는 운영사업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단독으로 10회(지도일수는 160일 이상 포함) 이상 제공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4. 연수과정 수료 : 품질경영체제 컨설턴트 신청자는 자격인증기관장이 인정한 연수기관에서 '품질경영체제 요구사항'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심사원 자격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경영체제 심사원보 이상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현재 유효한 자격 보유자만을 인정한다)는 동 교육을 이수 받은 것으로 본다.

또한, 품질경영체제 컨설턴트 신청자는 품질경영 분야의 이론 또는 기법 및 컨설팅 기법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자격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청자가 컨설팅 경력 또는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로서 경력을 가진 경우, 컨설팅 기법에 대한 교육은 제외할 수 있다.

품질경영 분야의 이론 또는 기법에 관한 교육의 예 : 품질경영 원칙 또는 품질경제성 원칙, 지속적 개선도구 및 기법, 통계적 기법, Team work 기법, P-D-C-A 방법론, 방침전개 방법론, 프로세스 매핑기법, 문제해결 기법(problem solving techniques), 모니터링 기법, 브레인스토밍 기법 등

5. 자격 유효기간 및 유지 : 컨설턴트의 자격유효기간은 자격인증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으로 하며,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컨설턴트 자격인증기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세미나, 워크샵 등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 자격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31

### [부속서 4] 환경경영체제 내부심사원의 최소 자격기준

동 기준 G4.3.9에 따라 환경경영체제 내부심사원의 자격기준은 최소한 다음의 각 호 이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개인적 특성 : 내부심사원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 윤리적, 관찰력, 통찰력, 유연성, 집요함, 결단력, 자립적, 개방적, 외교적, 의사소통능력, 실용적, 책임성, 협조적
2. 연수과정 수료 및 시험합격 : 자격인증기관이 정한 환경경영체제 내부심사원 양성과정 또는 환경경영체제 심사원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KAB가 인정한 환경경영체제 내부심사원 자격인증기관(이하 '내부심사원 자격인증기관'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자격인증 신청기한은 시험합격 후 3년 이내로 한다.
3. 학력 요건 : 고졸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4. 실무경력 요건 :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중 2년 이상의 환경경영체제 구축, 이행, 유지 또는 내부심사 경험을 보유하여야 한다. 단, 실무경력 기간은, 2년제 대학졸업의 경우 2년, 4년제 대학졸업의 경우 4년을 단축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의 경우, 환경경영체제 구축, 이행, 유지 또는 내부심사 경험 보유기간 2년 이상에서 1년을 단축 적용할 수 있다. 환경경영체제 구축, 이행, 유지 또는 내부심사 경험은 자격신청 이전 6년 이내에 수행한 경력이어야 한다.
5. 심사경험 : 환경경영체제 내부심사 또는 제3자 환경경영체제 인증심사의 전과정에 참여하여 2회 4일 이상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여야 한다. 심사경험은 자격인증 신청 이전 6년 이내에 수행한 경험이어야 한다.
6. 자격 유효기간 및 유지 : 환경경영체제 내부심사원의 자격은 자격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자격인증기관이 규정한 소정의 교육(세미나, 워크숍 등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 자격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31

### [부속서 5] 환경경영체제 컨설턴트의 최소 자격기준

동 기준 G 4.3.10에 따라 환경경영체제 컨설턴트의 자격기준은 최소한 다음의 각 호 이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개인적 특성 : 환경경영체제 컨설턴트는 최소한 ISO 10019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 윤리적, 관찰력, 통찰력, 유연성, 집요함, 결단력, 자립적, 의사소통능력, 실용적, 책임성, 협조적
2. 학력 요건 : 대학교 졸업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에 상응하는 경력이란 고등학교 졸업의 경우 4년 이상, 2년제 대학 졸업의 경우 2년 이상 기업체, 연구소, 단체 등에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KAB로부터 인정된 심사원 자격인증기관에 등록된 환경경영체제 인증심사원의 학력요건에 대한 적합성 입증은 인증심사원 자격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실무경력 요건 : 6년 이상의 환경관련 실무경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 실무경력에는 다음 3.1 내지 3.6항 중에서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경력은 자격인증 신청 이전의 최근 10년 이내 수행한 경력으로 한다.

#### 3.1 제3자 인증심사경력

환경경영체제(KS Q ISO 14001:2004)에 대한 제3자 인증심사의 전과정에 30회 120일 이상 참여한 심사경력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다음의 환경경영체제 컨설팅 경력 또는 환경경영체제 구축 및 유지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가. 컨설팅 경력 : 환경경영체제(KS Q ISO 14001) 구축 및 유지 등에 관한 자문서비스를 해당 프로젝트의 리더 또는 단독으로 최소 1회(자문일수가 최소 10일 이상) 이상 제공한 경력
- 나. 구축 및 유지경력 : 조직에서 환경경영체제(KS Q ISO 14001) 구축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전담부서에서 최소 1년 이상 직접적으로 수행한 경력

#### 3.2 컨설팅 경력

환경경영체제(KS Q ISO 14001) 구축 및 유지 등에 관한 자문서비스를 10회(자문일수는 160일 이상 포함) 이상 제공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이 경력에는 해당 프로젝트의 리더 또는 단독으로서 최소 3회(자문일수가 최소 60일 이상) 이상 제공한 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자격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31

### 3.3 환경경영체제 구축 및 유지 경력

환경경영체제(KS Q ISO 14001) 구축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전담부서에서 4년 이상 직접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3.4 강의 경력

'가'항내지 '나'항의 요구사항 중 1개를 충족하여야 하며, 아울러 '다'항 중 ①내지 ②항 중 1개 또한 충족하여야 한다.

가. 인증심사원 자격인증기관의 장이 승인한 KS Q ISO 14001:2004 인증심사원양성과정의 전임강사로서 7회 155시간 이상 강의를 수행한 경력.

나. 2년제 대학 이상에서 환경공학 및 환경기술에 관한 강의를 5년(강의시간은 100시간 이상) 이상 수행한 경력

다. 환경경영체제 컨설팅 경력 또는 구축 및 유지경력

- ① 환경경영체제(KS Q ISO 14001) 구축 및 유지 등에 관한 자문서비스를 해당 프로젝트의 리더 또는 단독으로서 최소 3회(자문일수가 최소 60일 이상) 이상 제공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② 조직에서 환경경영체제(KS Q ISO 14001) 구축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전담부서에서 최소 2년 이상 직접적으로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3.5 저술경력

환경경영체제(KS Q ISO 14001), 환경경영 또는 환경기술 분야의 이론 또는 기법 등에 관한 전문책자를 3권 이상 저술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중 적어도 2권은 단독으로 저술하여야 한다. 단, 책자는 ISBN 등록을 한 책자 및 박사학위 이상의 자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공인된 학술지에 등록된 논문으로 한정한다. 아울러 다음의 환경경영체제 컨설팅 경력 또는 구축 및 유지경력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가. 컨설팅 경력 : 환경경영체제(KS Q ISO 14001) 구축 및 유지 등에 관한 자문서비스를 해당 프로젝트의 리더 또는 단독으로서 최소 3회(자문일수가 최소 60일 이상) 이상 제공한 경력

나. 환경경영체제 구축 및 유지경력 : 조직에서 환경경영체제(KS Q ISO 14001) 구축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전담부서에서 최소 2년 이상 직접적으로 수행한 경력

### 3.6 기술지도사

## 자격인증기관 인정기준

## KAB-R-3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기술지도사로 등록된 자로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기술·청정생산 기술 및 설비관리 기술에 대한 진단·지도를 단독으로 10회(지도일수는 160일 이상 포함) 이상 제공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4. 연수과정 수료 : 환경경영체제 컨설턴트 신청자는 자격인증기관이 정한 연수기관에서 '환경경영체제 요구사항'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심사원 자격인증기관으로부터 환경경영체제 심사원보 이상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현재 유효한 자격 보유자만을 인정한다)는 동 교육을 이수 받은 것으로 본다.

또한, 환경경영체제 컨설턴트 신청자는 ①환경경영 분야의 이론 또는 기법과 ②환경기술 및 ③환경법규 및 협약에 관한 교육 및 ④컨설팅 기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자격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청자가 컨설팅 경력 또는 기술지도사의 경력을 가진 경우, 컨설팅 기법에 대한 교육은 제외할 수 있다.

환경경영 분야의 이론 또는 기법에 관한 교육의 예 : EPE(환경성과평가), LCA(환경전과정평가), EL(환경라벨링), EUP 등

환경기술 분야에 관한 교육의 예 : 청정생산기술, 수처리방지기술, 폐기물처리기술, 대기방지기술 등

환경법규 및 협약 등에 관한 교육의 예 : 국내 환경법규, 국제환경협약, 주요 국외 규제(EU 등), GHG 등

5. 자격 유효기간 및 유지 : 환경경영체제 컨설턴트의 자격유효기간은 자격인증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으로 하며,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컨설턴트 자격인증기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세미나, 워크숍 등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 자격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31

### 부 칙

1. 이 기준은 2004년 10월 27일부로 시행한다.
2. 한국인정원 회장은 국제표준화기구(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IAF :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Ltd.) 또는 태평양지역인정기관협력기구(PAC : Pacific Accreditation Cooperation) 등 관련 국제기구에서 자격인증기관 인정제도에 대한 국제규격 채택 또는 인증제도에 대한 국제적인 통용 또는 협약 등을 위하여 본 기준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해석지침을 따로 정하는 때에는 이 기준을 개정·공표한다.

### 부 칙

1. 이 기준은 2006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 부 칙

1. 이 기준은 2006년 5월 1일부로 시행한다.
2. 동 기준 부속서 2의 2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전에 KAB가 인정한 품질경영체제 인증심사원 연수기관에서 “내부심사원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의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KAB가 인정한 자격인증기관에서 시행하는 내부심사원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 이 기준에 따른 부속서 2의 2항의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이 기준 시행 전에 품질경영체제 심사원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의 경우, 내부심사원자격인증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자격신청을 하는 경우, 부속서2의 2항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3. 동 기준 부속서 3의 4. 연수과정 수료에서, 품질경영 분야의 이론 또는 기법에 관한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을 자격인증기관 또는 KAB가 별도로 정하여 공지할 수도 있다.
4. 컨설턴트 자격인증기관은 이해관계자들이 컨설턴트의 현황을 쉽게 파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 자격인증기관 인정기준

KAB-R-31

록 최소한 다음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개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 가. 등록된 컨설턴트 현황(총 자격자 수, 지역별 자격자 수, 연도별 자격자 수 등)
- 나. 개인별 컨설턴트 현황(등록된 컨설턴트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 컨설턴트명, 지역, 연락처, 주요 컨설팅 경력 등

## 부 칙

1. 이 기준은 2007년 9월 1일부로 시행, 적용한다.
2. 동 기준 [부속서 2] 또는 [부속서 4]의 2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전에 KAB가 인정한 해당 경영체제 인증심사원 연수기관에서 해당 경영체제 “내부심사원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의 경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KAB가 인정한 자격인증기관에서 시행하는 내부심사원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 이 기준에 따른 [부속서 2] 또는 [부속서 4]의 2항의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이 기준 시행 전에 해당 경영체제 심사원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가 내부심사원자격인증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자격신청을 하는 경우, 부속서2의 2항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3. 동 기준 [부속서 3] 또는 [부속서 5]의 4. 연수과정 수료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을 자격인증기관 또는 KAB가 별도로 정하여 공지할 수도 있다.
4. 컨설턴트 자격인증기관은 이해관계자들이 컨설턴트의 현황을 쉽게 파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다음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개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 가. 등록된 컨설턴트 현황(총 자격자 수, 지역별 자격자 수, 연도별 자격자 수 등)
  - 나. 개인별 컨설턴트 현황(등록된 컨설턴트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 컨설턴트명, 지역, 연락처, 주요 컨설팅 경력 등
  - 다. 자격 정지 및 취소된 컨설턴트 명과 사유.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적절한 식별수단을 사용하여 컨설턴트 명을 기재하여야 함.

## 부 칙

1. 이 기준은 2009년 5월 1일부로 시행, 적용한다.